

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76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는 도심형 고부가가치 주얼리산업의 육성을 위해 주얼리업체 집적지인 종로1~4가 일대(서울의 50.5%, 전국의 18.8%)를 2010년 1월 '종로 귀금속특정개발진흥지구'로 지정하고,
- 나. 2015년 7월에 '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'을 개관하여 디자인 개발, 콘텐츠 제작 및 판로 개척 지원, 품질향상을 위한 감정 지원, 업체 간 협업 지원 등 주얼리산업 육성을 위한 허브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는 중으로,
- 다.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아 전문성 있는 운영을 지속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개요

- 사무명 :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운영
- 위탁기간 : 2021. 1. 1. ~ 2023. 12. 31.(3년)
- 위탁방식 : 예산지원형(시설형 위탁)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(재위탁)
-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1,271백만원('20년 예산안 기준)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 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진흥 지구에 대한 지원) 및 제23조의2(사무의 위탁)

○ 추진 필요성

- 주얼리 품질향상을 위한 감정 지원과 디자인 개발, 시제품 제작,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므로 민간위탁을 통해 효과 제고가 필요함

다. 민간위탁 사무내용

- 브랜드화 지원 및 경영컨설팅 : 크리에이터 발굴, 전문인력 교육, 시제품제작 지원, 업체 간 협업, 경영컨설팅단 운영
- 판로개척 지원 : 마케팅 지원, 온·오프라인 新 판로 개척 지원
- 품질향상을 위한 감정지원 : 첨단장비 운영 및 분석지원, 선진 정보 교류
- DB 구축 및 활용 지원 : 주얼리 라이브러리 운영
- 시민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
- 시설 운영 및 관리(유지보수, 시설 대여 등)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순라길 89-8
- 규 모 : 대지 236m², 연면적 338.25m²(지하 1층, 지상 2층)
- 공간구성 : B1(감정지원실), 1F(운영사무실), 2F(라이브러리, 포토스튜디오)

마.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절차 이행

-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('20. 2.12~6.22) : 매우우수
-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('20. 7. 8)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

제13조(진흥지구에 대한 지원)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, 지원프로그램의 기획·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3조2(사무의위탁) ② 시장은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그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·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1년 예산편성(예정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도시제조업거점반 패션정책팀 최현희 (☎ 2133-8780)